이혼·이혼 및 재산분할등

[대구지방법원 2010. 10. 19. 2010르749(본소),2010르756(반소)]



【전문】

【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】

【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】

【제1심판결】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. 5. 18. 선고 2009드단16164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0. 9. 14.

【주문】

- 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가. 본소 : 본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이혼한다. 나. 반소 :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, 위자료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8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)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가. 본소 : 본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이혼한다. 나. 반소 :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, 위자료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8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)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가. 본소 : 본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이혼한다. 나. 반소 :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, 위자료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8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)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가. 본소 : 본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이혼한다. 나. 반소 :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, 위자료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8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억 원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)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가. 본소 : 본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이혼한다. 나. 반소 :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, 위자료로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8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).

【이유】

】 1.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- 원고는,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초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항소특약이 있었으므로,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- 그러나,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항소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- 2. 본안에 대한 판단
-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- 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형한(재판장) 전우석 김주미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